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7 발의연월일: 2020. 10. 16.

발 의 자:이개호·윤재갑·김병기

홍성국 · 송갑석 · 위성곤

김승남 • 신정훈 • 주철현

강병원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수사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해양주권침해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 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나. '대간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직무 추가 및 '치안정보'를 '공 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관련 정보'로 변경함(안 제14 조).
- 다.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구체적 수사지휘를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호·경비·대테러작전"을 "경호·경비·대간첩·대 테러작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 의 수집·작성·배포"를 "예방·진압·수사·피해자 보호"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사의 지휘·감독)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 ④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
	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
	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
	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
	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
	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
	이라 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
	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u><신 설></u>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
	에 따라 구체적 수사지휘를 개
	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 저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 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u>경호·</u> 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 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 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 8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 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 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 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데14조(직무) ①	
	<u>경호·</u>
경비 • 대간첩 • 다	<u> 테러작전</u>

- ------<u>예방·진압·수사·</u> <u>피해자 보호</u>-----
-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 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u><신 설></u>	제15조의2(수사의 지휘·감독) 수
	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 수사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
	<u>무원을 지휘·감독한다.</u>